

인천지방법원 2022. 11. 29 선고 2022가단21938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전수려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2. 11. 8.
판 결 선 고 2022. 11. 29.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B와 피고 사이에 2021. 12. 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인천지방법원 2021. 12. 6. 접수 제4925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B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구상금 채권이 있다.

- B는 원고에게 18,867,916원 및 그 중 18,477,885원에 대하여 2022.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B는 2021. 12. 3. 피고에게 그 소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 2억 5,000만원(임대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피고가 승계하는 것으로 함)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21. 12. 6.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3) B는 2021. 11. 10.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6, 변론 전체 취지

나. 판단

1) 원고의 B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1).

2)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적극재산 중 일부인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2).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조현욱

별지

1)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다263355 판결 등 참조

2)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